

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·건물및자동차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·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중 “상이군경”을 “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”로 한다.

제 2 조 제 2 항 중 “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(다만, 2급 내지 5급의 경우”를 “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(다만, 3급 내지 5급의 경우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 3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3 조(면제신청) ①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 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(별 표)

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

급 수	분 류 번 호
3 급	5, 13, 22, 23, 24, 27, 31, 72, 78, 81, 83, 86, 89, 503
4 급	108, 109, 111, 112, 113, 504
5 급	25, 26, 28, 29, 41, 73, 77, 92, 505
6 급 (복 합 호수자)	1 항 35, 36, 47, 48, 115, 116, 117, 119, 120, 121, 122, 125, 126, 127, 129, 130, 131
	2 항 16, 30, 32, 37, 39, 40, 44, 49, 52, 53, 54, 57, 58, 59, 60, 64, 65, 67, 69, 70, 74, 75, 88
비 고	다만, 분류번호 503, 504,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.

(현 행)

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

급	수	분	류	번	호
2 급		14, 79, 98, 99, 102, 104, 105			
3 급		5, 13, 22, 23, 24, 27, 31, 72, 78, 81, 83, 86, 89, 503			
4 급		108, 109, 111, 112, 113, 504			
5 급		25, 26, 28, 29, 41, 73, 77, 92, 505			
6 급 (복 합 호수자)	1 항	35, 36, 47, 48, 115, 116, 117, 119, 120, 121, 122, 125, 126, 127, 129, 130, 131			
	2 항	16, 30, 32, 37, 39, 40, 44, 49, 52, 53, 54, 57, 58, 59, 60, 64, 65, 67, 69, 70, 74, 75, 88			
비	고	다만, 분류번호 503, 504,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.			

(개 정 안)

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

급	수	분 류 번 호
3	급	5, 13, 22, 23, 24, 27, 31, 72, 78, 81, 83, 86, 89, 503
4	급	108, 109, 111, 112, 113, 504
5	급	25, 26, 28, 29, 41, 73, 77, 92, 505
6 급 (복 합 호수자)	1 항	35, 36, 47, 48, 115, 116, 117, 119, 120, 121, 122, 125, 126, 127, 129, 130, 131
	2 항	16, 30, 32, 37, 39, 40, 44, 49, 52, 53, 54, 57, 58, 59, 60, 64, 65, 67, 69, 70, 74, 75, 88
비	고	다만, 분류번호 503, 504,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.